

가축거래상인 등록 · 홍보 및 관리계획

1. 추진경위

□ 가축거래상인 등록 및 관리계획 관련기관 통보('14.12.3)

- 악성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제와 함께 가축거래상인*등록제 등을 도입('13.3)

* 가축거래상인 : 소·돼지·닭·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·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(축산법 제2조제9호)

2. 홍보 및 관리계획

□ 홍보 개요

- 홍보 주관 : 지자체(시·군), 생산자단체(토종닭 협회 등), 농협중앙회
- 홍보 대상 : 가금유통중개상(172명), 전통시장 가금판매상, 가든형식당, 단체·협회(농협, 양계, 육계, 오리, 토종닭) 회원 농가 등
- 홍보 기간 : '14.12.10~'15.1.10(1개월) 등록의무 홍보 및 일제등록 독려
- * 특히, 홍보기간 이후 일제점검을 통한 단속 실시함을 공지

□ 홍보 방법

- 시·도 및 시·군은 플랜카드, 리후렛*, SMS,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전통시장, 가든형식당, 가금중개상, 농가 등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후 보고('14.12.12일까지)
- * 농식품부에서 기 배부한 리후렛*을 이용하고 필요시 자체 추가 제작하여 사용
- ** ①가금유통업자 차단방역요령, ②가든형식당 차단방역요령, ③닭·오리 농장 방역매뉴얼
- 가든형식당(953개소)은 분포 위치(도살 가능한 고시지역*)를 고려하여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직접 방문하여 홍보
- *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(가축의 도살 등) 제3항 : 고시지역에서만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할 수 있음
- 전국 가금유통상인(172명)에 대해 전화, SMS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홍보
- * 관련협회 및 농식품부 AI 상황실에서도 SMS 등을 이용하여 동시 홍보 추진

- 토종닭 협회, 농협 등은 '전통시장 일제소독의 날' 및 상설·정기시장 (5일장, 10일장 등) 개설일에 리후렛 등 이용하여 가금판매소 등에 홍보
 - 전통시장 상인번영회(협회)와 협의하여 시장 진입로, 가금판매소 밀집지구 등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홍보
 - * 특히, 가금판매소를 통해 가금유통중개상에게 동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
 - 축산농가 대상 교육 시 미등록 가축거래상인과 거래 금지 및 GPS 미설치 가금운송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홍보

〈 플랜카드 시안 (예시) 〉

**가금유통중개상 등 가축거래상인은
일정 교육 이수 및 관할 시군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**
- 미이행시 벌칙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(축산법 제54조) -

〈 주요 홍보 내용 〉

- ①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 및 준수사항 : 축산법 제34조의2,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4
- ② 유통중개상 운행 가금운반차량의 축산차량등록 및 GPS 설치 의무 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(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)
- ③ 가든형식당은 닭·오리 사육장의 정기 세척·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고,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 : 가전법 제17조(소독설비 및 실시 등)
 - * 가든형식당의 가금사육장이 15㎡ 이상인 경우는 축산법상 축산업등록대상 이므로 관할 시·군에 신고·등록 의무

□ 관리 및 결과 보고

- 시·도는 가금유통중개상 및 전통시장, 가든형식당에 대한 홍보 실적을 매주 금요일(15시까지) 취합하여 농식품부 AI 상황실로 보고
 - 특히, 가금유통중개상 대상 홍보내역 및 중개상의 인지여부 기재
 - * 전통시장, 가든형식당 플랜카드 설치 등 실적은 현장사진 첨부·보고

참 고

전국 전통시장 · 가금유통증개상 · 가든형식당 현황

(기준 : 2014. 12. 8)

구분	전 통 시 장 가 금 판 매 소	가금유통상인		가든형식당		비고
	개소수	상인수	계류장	개소수	사육수수	
계	315	172	119	953	121,862	
서울	-	-	-	-	-	
부산	11	5	5	-	-	
대구	9	5	4	23	1,340	
인천	1	1	1	9	1,835	
광주	57	6	5	11	628	
대전	1	2	1	23	429	
울산	4	6	5	18	1,808	
세종	-	1	1	6	345	
경기	44	31	18	76	7,875	
강원	-	6	5	96	5,276	
충북	13	13	6	38	2,750	
충남	3	18	16	85	11,041	
전북	76	34	16	113	34,350	
전남	59	28	20	118	8,087	
경북	24	12	12	160	15,979	
경남	10	4	4	165	15,189	
제주	3	-	-	12	14,930	